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를 대체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새로이 규정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이 '23. 1.12일부로 시행 예정인바, 전입세대확인서 내 기재내용, 신청서의 서식 및 증명자료 등을 규정하고 별표·별지를 개정 및 신설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변경하고,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15 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 중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해당 시·군 또는 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 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을 “전입세대 열람 또는 교부를”로, “물건소재지”를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로, “(제1호부터 제3호”를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전입일자만 열람하게”를 “전입일자를 확인하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열람”으로,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을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전입세대 열람을”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로, “열람기간”을 “열람 또는 교부기간”으로, “할”을 “하거나 교부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9조2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에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전입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민등록표 및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교부는 1통”을 “교부 및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으로, “등·초본교부”를 “등·초본 교부 및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9조제2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중 “■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 중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열람방법(본인·세대원·수임자·기타)”를 “열람방법(본인·세대원·기타)”로 한다.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5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위임 내용의 초본 교부 중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로 하고,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를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로 한다.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교부 건물의 시설의 또는 대상 또는 소재지	
열람 교부 건물의 시설의 또는 대상 또는 소재지	
열람 교부 건물의 시설의 또는 대상 또는 소재지	
열람 교부 건물의 시설의 또는 대상 또는 소재지	
열람 교부 건물의 시설의 또는 대상 또는 소재지	

별지 제23호서식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로 하고, “일련번호”란 우측에 “열람/교부”란을 삽입하며, “열람 일시”를 “열람 또는 교부 일시”로 하고,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를 “열람 또는 교부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1호의9 서식, 별지 제1호의11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제출서류 등(제14조제2항 전단 관련)

대상자 및 항목	신 청 서	증 명 자 료
1. 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별지 제15호서식	1.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임대차계약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1.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2.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4. 임대차계약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가목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경매 일시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나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5.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6.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라목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7.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분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비고

1. (신분증명서) 영 제49조2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 관계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그 기관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중 1개 제시).
2. (신청서식) 영 제49조2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 변경신고자 (총 명)							
해외체류 변경신고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연락처)		
해외체류주소	(국가명)	(도시명)	(연락처)				
변경할 국내 주소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작성(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동 층 호							
※ 아래 사항은 세대주가 변경신고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남은 세대	남은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연락처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변경신고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변경할 사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2.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국내주소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변경하려는 해외체류자는 출국 전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에만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신고를 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변경할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변경할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변경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정자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변경신고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변경될 주소의 세대주와 변경할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3. 변경하려는 사람이 변경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변경신고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변경하려는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므로, 남은 세대의 세대명부 구성 및 세대주 확인 등을 위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택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중 1개)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 또는 교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 권한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중 1개)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9.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0. 경매 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등,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교부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또는 교부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1.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13.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란에 기재된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입세대확인서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 표시되는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 실거주하지만 전입하지 않은 세대 또는 전입 시 주소를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란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방식으로 신고한 세대는 전입세대확인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4.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15. 2011년 10월 31일 이후 전입한 세대는 원칙 상 도로명주소로만 관리됩니다.
16.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세대가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번주소로 주민등록이 된 세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7.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2세대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각 세대의 구성원 중 최초 전입일자가 빠른 구성원이 있는 세대부터 순번이 매겨집니다.
18. 구분 등기되지 않은 건물 또는 시설이나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전입세대 전체가 표시됩니다.
19. 교부된 전입세대확인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열람된 전입세대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서

※ 유의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발급번호					발급일자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세대순번	세대주/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세대주				동거인				
	최초 전입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기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1.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란에 기재된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입세대확인서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 표시되는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 실거주하지만 전입하지 않은 세대 또는 전입 시 주소를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란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방식으로 신고한 세대는 전입세대확인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2011년 10월 31일 이후 전입한 세대는 원칙 상 도로명주소로만 관리됩니다.
4.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세대가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번주소로 주민등록이 된 세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2세대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각 세대의 구성원 중 최초 전입일자가 빠른 구성원이 있는 세대부터 순번이 매겨집니다.
6. 구분登記되지 않은 건물 또는 시설이나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해당 건물 또는 시설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전입세대 전체가 표시됩니다.
7. 교부된 전입세대확인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열람된 전입세대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 식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 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 1호의15서식에 따른다.</u>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 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 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 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 의 신청은 <u>별지 제1호의15서식</u> 으로 한다.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 ----- ----- ----- ----- ----- ----- ----- ----- <u>별지 제1호의16서식</u> ----- -----.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 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 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 까지 <u>해당자의 주민등록지</u> 를 관 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 ----- ----- ----- --- <u>해당 시·군 또는 구</u> ----- ----- -----.
제14조(<u>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u>)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 관의 장은 <u>법 제29조제1항에 따</u>	제14조(<u>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 는 교부</u>) ① ----- ----- <u>전입세대 열람 또는</u>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 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 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교부를 -----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

전입일자를 확인하게 -----
-- . -----

----- 확
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
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삭 제>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삭 제>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삭 제>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
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삭 제>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
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삭 제>

②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
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
다.

② 영 제49조2제5항 본문에 따
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5
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
표2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
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
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
설의 소재지에 대해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③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에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전입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열람 -----

· 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범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신 설>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생략)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

-----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

-----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대장-----
-----.

⑥ -----

-----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

--- 열람 또는 교부기간-----
----- 하거나 교부할 -----
-----.

<삭 제>

⑦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수수료) ① -----

-----.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
일 이내 :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 :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
개월 미만 :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
개월 이상 : 10만원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
일 이내 :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 :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
개월 미만 :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
개월 이상 : 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7